

H-10 :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활용

1.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

1)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

- (1) 사업주가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할 경우
 가. 기존훈련 : 지정훈련비 × 훈련수료인원※ 훈련비용 인정시간 제한
 (1일 8시간, 월 117시간)조치 삭제
 나. 기준외훈련 : 지정훈련비의 90%(대규모 기업은 80%) × 훈련수료인원

지정훈련비라 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·지정시 지방노동관의 장으로부터 인정, 지정받은 훈련비 중 훈련비 중 숙박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금액이나, 자체훈련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신청한 훈련비(숙박비 및 식비제외)가 별표1의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훈련 실시 후에 정산한 실훈련비를 지정훈련비로 본다.

- (2) 사업주가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
 - 지정훈련비 × 지원금지원율 × 훈련수료인원

【지원금 지원율】

구 분	기 준 훈 련	기준외훈련	
		대규모기업	우선대상기업
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건표금액이하	100%	80%	90%
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건표 100초과~150%이하	90%	70%	80%
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건표의150초과~200%이하	80%	60%	70%
지정훈련비시간당 단가가 조건표의 200%초과	70%	50%	60%

-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훈련지원금은 고시단가에 실훈련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

산출한 금액의 1.5배를 초과할 수 없고,

- 위탁훈련의 경우 당해 과정에 적용된 고시단가의 경우보다 훈련인원 또는 훈련 시간이 한단계 적은 고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최대지원금액과 지훈련비 시간당단가 대비 고시단가의 비율이 당해과정에 적용된 것보다 한단계 적은 경우의 지운율로서 산정할 수 산정할 수 있는 최대지원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.

가. 훈련수당 지원

- 사업주가 구직자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

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어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급

나. 식비 및 기숙사비 추가지원

- 훈련실시기관이 기숙가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숙사비(식비 포함)는 1일 7,000원(1일 이상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는 훈련을 실시하고,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175,000원)을 한도로 지원

- 1일 5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로 1일 2,500 한도로 지원

※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단위로 기숙사비를 지운하되,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결에 관계없이 지원하고,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탈락한 달에 있어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월 175,000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

다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

- 사업주가 1월 이상의 집체훈련방법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,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지원금은

- 현장훈련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집체형식의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어주가 지급한 훈련수당으로 하되,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의50%를 초과할 수 없음

라.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

○ 우편매체를 이용한 훈련일 경우

- 지정훈련비(지정시 훈련과정 별 월 5만원 한도)에 사업규모별 지원율(대기업은 80%,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90%)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

○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자체 또는 위탁훈련인 경우

- 인터넷통신훈련비(지정훈련비)× 사업규모별 지원율(대기업은 80%,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%)× 훈련수료인원

인터넷 통신훈련비 지정방법

훈련시간이 20시간이상, 훈련학습량이 200Frame±20인 경우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훈련 내용이 텍스트, 그래픽으로만 이루어진 과정은 52,800원, 동영상(화)상 및 오디오 등이 추가된 경우 66,000원까지 인정 또는 지정가능

훈련학습량이 최소기준 단위씩 증가할 경우 인정·지정 훈련비도 비례하여 인정·지정가능 (훈련학습량이 최소기준단위 2배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기준의 훈련비단가 적용)

2. 유급휴가 훈련지원

1) 지원대상

○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, 다만, 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2) 대상훈련

○ 총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, 총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과정

- 다만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의 기능·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에 대하여는 총 20시간 이상 인 과정도 포함

※ 총 훈련기간에는 법정 공휴일, 일용일 등이 포함됨

3) 비용지원수준

○ 임금 : 당해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통상임금의 1/3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/2)

○ 훈련비용 :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

※ 1인당 연간 비용지원한도(400~600만원) 폐지

3. 해외직업능력 훈련에 대한 지원

1) 승인신청

○ 해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

○ 지방노동관서장은 훈련실시를 위한 구비여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해외훈련계획승인통지서를 통지

2) 훈련과정 요건

○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의 훈련계약을 체결 또는 해외 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훈련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(계약서, 영수증)

○ 생산성향상, 품질향상,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대상이 되는 과정일 것

○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
3) 비용지원

○ 위탁훈련비×훈련수료인원(기숙사비, 체재비 제외, 훈련비 지급당일의 환율적용)

- 단, 훈련직종별 훈련비 시간당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.

4. 비용지원절차

1) 신청 및 지원절차

○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

-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 종료 후 또는 단위 분기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

-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
-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 명부
- 임금대장사본(유급휴가훈련에 한함)

○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지급결정통지

- 지방노동관서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해 사업주에게 통지

5. 비용지원한도

○ 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80%(대규모기업은 120%)임.

-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실시 연인원이 당해연도 훈련실시 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일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%까지 추가지급

※다만,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간에는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00% (대규모기업은 150%)

-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(직업능력개발훈련+유급휴가훈련지원금)는 개별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지원함. 다만,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, 특정 사업장의 지원금액이 120/100(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180/100)를 초과할 때에는 본사 관할지방관서와 협의, 기업전체의 비용지원한도를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장의 120/100~180/100을 초과하여 지원가능

- '99. 9. 1 이후에 새로이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훈련비용이 75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훈련비용전액을 지원하고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과 개산보험료×1.8(대규모 1.2) 가운데 큰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

6.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

-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지원
 - 비용지원수준 및 절차는 사업주자체훈련과 동일
 - ※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비용지원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음

7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·장비설치 비용지원 및 대부

1) 대부대상자

- 직업능력개발 적용사업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
- 사업주 이외의 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, 사업주단체,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영리법인,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
2) 대부범위

-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·장비에 필요한 비용
 - 사업주단체 40억원, 사업주 2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%까지 대부가능
 -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영리법인,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%까지 대부가능

3) 대부조건

- 대부금리
 -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단체 : 연리 1%

- 대기업 사업주 : 연리 2.5%
-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영리법인,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: 연리 6%

○ 대부기간 : 10년(5년거치 5년상환) 이내

○ 상환방법

- 이자 : 연 4회 분기 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 납부
- 원금 :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 4회 균등상환

4) 대부절차

- 대부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3항)
- 대부신청서,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 능력개발센터에 신청

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 대부업무 흐름도】

